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천적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율과 조절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연계·등록 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관리 및 상담(자동응답안내, 직접전화, 진료안내문자)

○ 지역주민 대상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지역 캠페인)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인력현황 : 9명(센터장 1, 팀장 1, 행정 1, 운동처방사 1, 간호사 2, 영

양사 3)

○ 소 재 지 :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4층

○ 지원시설 : 교육실, 상담실, 사무공간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자격요건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교) 또는 의료법인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마. 소요계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595,180천원(국비 50%, 시비 50%)

※ 매 회계연도 질병관리청 확정내시 기준으로 예산액 변동

- 인건비 380,750천원, 운영비 192,183천원, 여비 5,400천원, 보상금 8,847천원, 자산취득비 8,000천원

○ 진행절차

의회동의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	계약체결, 선정결과 공고	➡	일상감사 의뢰
`26. 8.		`26. 8.~9.		`26. 10.		`26. 11.		`26. 12.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위임 및 위탁)에 의거하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구 분	검 토 의 견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관리와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조례,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표준 운영비로 전문인력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업무추진에 효율적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인력 9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행정 1명, 운동처방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3명)으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환자 현황, 교육 현황, 월별실적 및 예산 사용 보고를 통한 정량·정성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성과평가함으로써 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므로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임
종 합 의 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전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예방교육, 캠페인, 조기 발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무운영 및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사. 향후계획

- 2026. 9. ~ 10.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6. 11. : 위탁계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만료(2026.12.31.)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를 추진차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해당 사무는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하여 수행해 온 사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심뇌혈관질환법」제20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 임 1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0조>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제16조, 20조>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